

反dumping制度의 競爭政策的 側面에서의 考察

蔡 旭*

-
- I. 덤플링의 概念
 - II. 反dumping制度의 概要
 - III. 反dumping制度의 經濟學的 考察
 - IV. 反dumping制度의 改善方案
 - V. 結論
-

I. 덤플링의 概念

1. 덤플링의 定義

덤플링은 흔히 물품을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플링은 국제협약인 GATT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 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플링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플링마진이라 일컫는다.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수출국내의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덤플링마진”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가격이 수입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할지라도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높을 때에는 덤플링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덤플링은 단순한 국제적 가격차별의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덤플링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는 매우 복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잡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즉,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서로 비교가능하여야 하는 바, 두 가격이 비교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해당물품의 출고가격, 즉 국제시장간의 가격차이를 발생시키는 운송비용이나 판매비용이 가산되기 이전의 공장도가격수준에서 비교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조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물품이 수출국내에서는 극히 소량이 판매되거나 혹은 전혀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대신에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이나 구성가격 등이 사용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출국내에서 원가 이하에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 되었는 바, 이는 사실상 국내에서 원가이하판매도 덤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덤핑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¹⁾

2. 덤핑의 類型

덤핑은 그 지속기간에 따라서 크게 단기적 덤핑(short-run dumping)과 장기적 덤핑(long-run dump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는 물론 시간적 개념에 따른 분류이기는 하나, 사실상 덤핑의 발생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국내적으로 과잉생산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재고를 외국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교란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발적 덤핑(sporadic dumping)과 수입국내 경쟁기업들의 시장축출이나 잠재적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약탈적 덤핑

-
- 1) Deardorff, A., "Economic Perspectives on Antidumping Law", in J. Jackson and E. Vermulst(eds.),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1991, p. 23 참조.
 - 2) 덤핑의 유형은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Carlton & Perloff는 덤핑을 그의 형태에 따라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상호덤핑(reciprocal dumping)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Slavatore는 시간의 연속성 및 덤핑동기에 따라 지속적 덤핑(persistent dumping), 약탈적 덤핑, 산발적 덤핑(sporadic dumping)으로 분류하고 있음(김정훈, "反덤핑 관세의 경제이론적 배경", 『WTO와 反덤핑 관세』(김기수 編), 1995, p. 18 참조). 한편 Willig, R.은 덤핑을 그 동기에 따라 시장확장형 덤핑(market expansion dumping), 주기적 덤핑(cyclical dumping), 국영무역 덤핑(state-trading dumping), 전략적 덤핑(strategic dumping),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Marceau, G., *Anti-Dumping and Anti-Trust Issues in Free Trade Area*, Oxford, Clarendon Press, 1994, pp. 15~16 참조).

(predatory dumping) 등이 단기적 덤픽에 해당되며, 기존의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간접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보다 한층 싼 값으로 장기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행위가 장기적 덤픽으로서 흔히 지속적 덤픽(persistent dumping)이라고도 일컫는다. 덤픽을 최초로 이론화한 Viner는 일반적으로 지속적 덤픽은 수입국에 유익한 행위인 반면, 단기적 덤픽 특히 약탈적 덤픽은 유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리된 시장(segmented market)에서 가격차별적 독점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속적 덤픽은 수입국내의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조정비용보다는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즉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가 크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입국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경쟁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약탈적 덤픽은 궁극적으로 수입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통하여 덤픽으로 인한 손실회수는 물론이고 독점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수입국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Viner의 분석은 덤픽의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서 수입국내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미치는 실질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덤픽 개념의 확대에 따른 유형별 덤픽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³⁾

II. 反덤핑 制度의 概要

1. 反덤핑 制度의 意義와 性格

덤픽은 그 자체적으로는 수출국 기업의 이윤극대화원리에 입각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수입국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의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픽을 하였다는 증거와 함께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픽 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덤픽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픽 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3) Marceau, G., *op. cit.*, p. 15 참조.

관세, 즉 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GATT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면에서는 일반관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발생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플 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되어 특정 수출국 혹은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모든 수출국이나 수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관세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흔히 세이프가드(safeguards)라고 불리우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의를 갖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이 국제규범을 위배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내에 수입이 증가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시에限時的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反덤핑 조치는 수출국이 GATT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덤플 행위, 즉 불공정무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수입국내에 산업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이므로 다분히 응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反덤핑 制度는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GATT 규정이 모호한 점이 많아, 자칫하면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同一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각국은 GATT의 모호한 규정을 이용하여 反덤핑 制度의 운용절차를 自國에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국가들이 GATT상에 근거가 없는 각종 제도들을 자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덤플이라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조사당국의 편의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反덤핑 制度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시간의 조사기간을 통하여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被訴企業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反덤핑 制度의 자의적인 운용이 GATT에 의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反덤핑 制度의 운용에 있어서는 덤플 여부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판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2. 反덤핑制度의 略史

덤핑은 18 세기 말경부터 英國의 제조업자들이 美國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 세기 말경부터는 덤플로 인한 국가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反덤핑法을 입법화한 후로 뉴질랜드(1905년), 濟洲(1906년), 日本(1910년), 남아프리카(1914년), 美國(1921년), 英國(1921년) 등이 차례로 입법화함으로써 덤플은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美國의 경우, 反덤핑法의 역사는 사실상 덤플 관련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1916년 財政徵收法(Revenue Act of 1916)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同法은 反덤핑 관세의 부과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덤플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규정이었으며, 反덤핑 관세의 부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反덤핑法은 1921년 관세법 201條(Tariff Act of 1921 § 201)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反덤핑 관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20년대 초 國際聯盟(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世界經濟會議(World Economic Conference)로서, 이것이 후에 ITO와 GATT의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었다. 즉, 일부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反덤핑 규정들을 통일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美國은 국내의 입법 내용을 ITO憲章에 상당부분 반영시켰으며, 이것이 反덤핑 및 相計關稅를 규정하고 있는 現 GATT 第6條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GATT會議에서는 덤플을 규제하기 위한 特別規定(GATT 第6條)이 마련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GATT는 “締約國들이 덤플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의 경쟁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덤플 수입된 물품의 덤플 마진을 相殺하기 위해 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오늘날 國際 反덤핑規程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同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아 다수 국가들이 덤플 마진이나 피해산정에 있어서 자국의 反덤핑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결국 국제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가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GATT의 第6次 다자간협상인 케네디라운드(1962~1967)에서는 각국의 자의적인 운용절차를 제한하기 위한 國際 反덤핑 코드가 제정되었는 바, 同 코드는 東京라운드 막바지에 이르러 대폭 보완·개정되어 1980년 1월부터 발효된 후 1994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同 코드 역시 反덤핑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크게 미흡하였으며,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86~1993)을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절차상의 많은 규정이 개정·보완되어 오늘날 적용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WTO/反덤핑협정은 원가이하판매, 구성가격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 기준설정을 통한 덤픽마진 산정의 객관화, 조사종결을 위한 덤픽 마진 및 피해관련 최소기준의 설정, 제소요건의 계량화를 통한 제소기준의 명료화, 신규수출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 자동소멸시효의 설정 등을 통하여 수입국 조사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反덤핑 제도 운용의 여지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 그러나 反덤핑 제도는 그의 성격상 앞으로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국제적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反덤핑 制度의 經濟的 效果

(1) 수입국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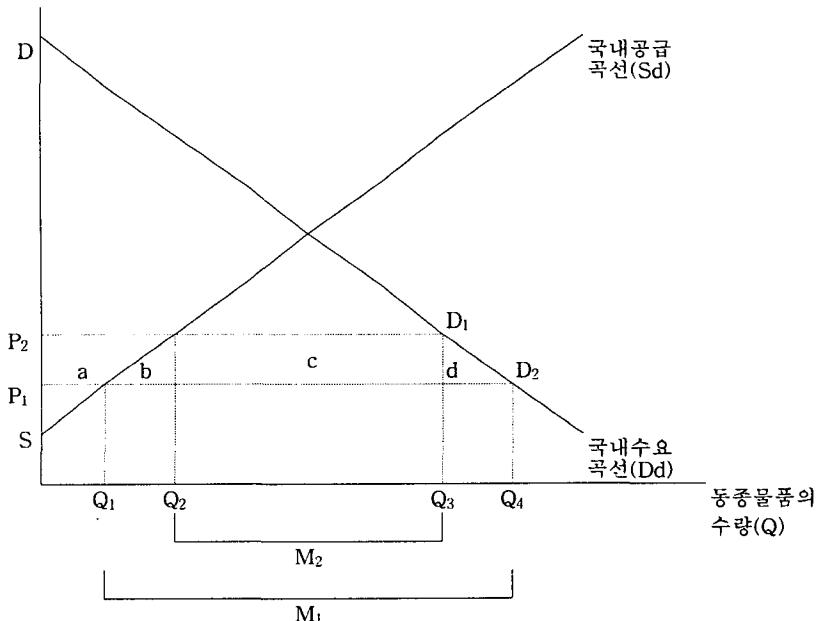
수출국 또는 수출자의 덤픽 사실이 입증되고, 그로 인하여 수입국내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될 경우, 수입국이 덤픽 마진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 관세, 즉 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와 같은 反덤핑 관세의 효과는 덤픽의 종류나 수입국내의 경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입국내의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입국 입장에서 볼 때, 反덤핑 관세는 국내 경쟁기업들의 생산자잉여를 증대시키는 반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잉여의 증대분

4) 蔡旭, “反덤핑”,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149~169 참조.

보다 크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수입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흔히 관세인상이 소비자 및 국내경쟁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Corden-Johnson 모형(C-J 모형)을 통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된다. <圖-1>에서 DD_d는 덤프 수입된 물품과 동종인 국내물품의 수요곡선을 나타내고 SS_d는 동 물품의 공급곡선을 나타내며, P₁은 동물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의 국내가격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그와 같은 경우 수입국내 동종물품의 공급량 및 수요량이 각각 Q₁ 및 Q₄에서 결정되므로 당해국가는 M₁ 만큼의 수량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로 동 물품의 가격이 P₂로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여 공급량과 수입량이 각각 Q₂와 Q₃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그 국가의 수입량은 M₂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圖 1> 反덤핑 관세가 수입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를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해 보면, 소비자잉여는($\triangle DP_1D_2 - \triangle DP_2D_1$), 즉 $a + b + c + d$ 만큼 감소하는 반면, 공급자잉여는 a 만큼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C에 해당하는 수입국정부의 조세수입이 수요자에게 재분배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수입국내에 $b+d$ 만큼의 국가적 효용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잉여의 증대에 비해 보다 큰 소비자잉여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전체적으로 손실을 안겨 준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반덤핑 관세**는 여타의 무역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수입국내의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고용창출, 투자수요, 당해물품의 중간소비자(산업소비자)의 경쟁력 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반덤핑 제도**는 사실상 외국의 경쟁자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생산자로 하여금 그들의 수출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국내의 독점적 또는 과점적 생산자들의 가격설정행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2)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

반덤핑 제도가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국의 경우와는 달리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기업은 수입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하여 수입국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그로부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반덤핑 관세**가 수입국내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때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당해국에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수출기업이 갖는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 제도**는 **반덤핑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덤프инг 제소 또는 제소위협 자체만으로도 효율적인 외국수출기업의 국내진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조사과정에서의 기업정보제공 및 법정비용 등은 수출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므로, **반덤핑 제도**는 조사위협 자체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외국시장진입에 있어서 효과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덤프инг 제소의 위협은 효율적인 외국생산자로 하여금 해외판매증대 및 시

5) 동일한 관세수준의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의 효과는 해당물품의 공급 및 수요탄력성, 수입품과 국내동종물품의 대체탄력성 및 해당산업이 국내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蔡旭,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 제도와 우리 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 16~18 참조).

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 가격 설정을 저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즉, 제소에 대한 우려는 수입국내의 생산자에 비해 경쟁력이 강한 효율적인 외국 생산자로 하여금 수출가격을 국내 생산자의 가격과 근접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도록 강요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편 한 국가의 반덤핑 조치의 활용은 그의 제재를 받는 수출국에게도 반덤핑 혹은 그와 유사한 수입제한 조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세계 무역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입국내에 독점 또는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수입국은 덤플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즉 독점이윤의 수출자에게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곧 수출국에게도 수출기업의 이윤상실을 만회하기 위한 반덤핑 정책의 사용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련 국가들의 연쇄적인 반덤핑 조치의 사용은 각 국가간의 시장 분할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간의 효율적인 자원이동을 저해하고 국내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자들의 상품 개발 및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의 감소와 물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모든 관련 국가의 국민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III. 反덤핑 制度의 經濟學的 考察

1. 國際價格差別(Price Discrimination)

전술한 덤플링의 정의에 의하면, 덤플링은 특정 물품을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즉 국제 가격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덤플링이 과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또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덤플링을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기업이 덤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생산자가 해외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 보다 강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운송비와 관세 장벽 등으로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국내의 소비자가 동일 물품을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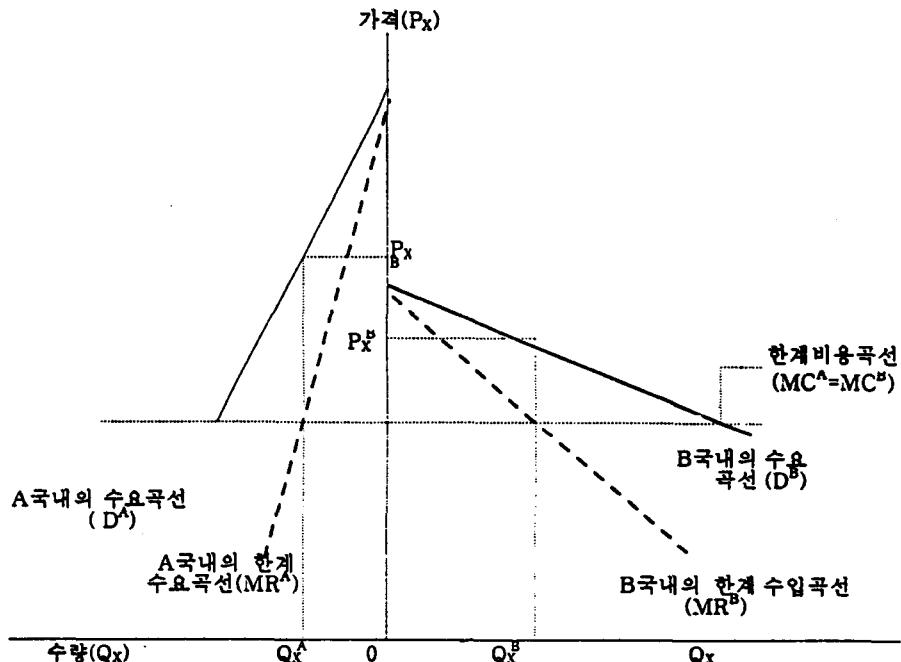
으로부터 싼 값에 再購入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기업이 덤핑을 하려는 의도는 <圖 2>의 분석을 통하여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품 X를 생산하는 A국의 기업이 B국에 同 물품을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그 기업이 A국에서 B국에 비해 보다 강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물품 X에 대한 B국 내의 수요탄력성은 A국 내의 수요탄력성보다 높은 것이다. 즉, B국 내의 수요곡선 (D^B)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며, 그에 따른 한계수입곡선(Marginal Revenue Curve : MR^B)도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을 보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한계비용(Marginal Cost : MC)이 일정(constant)하다고 가정하면, 물품 X는 A국 내에서는 P_X^A 의 가격에 Q_X^A 의 수량이 판매될 것이며, B국 내에서는 P_X^B 의 가격에 Q_X^B 의 수량이 판매될 것이다. 즉, 각국에서의 판매가격 및 수량이 이윤극대화원리에 따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교차되는 점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두 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은 동일가격을 적용할 때에 비해서 보다 많은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격차별이론에 의하면, 특정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자연적 혹은 인위적 무역장벽에 의해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경우에는 同 회사의 덤핑행위는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보호무역은 同 회사가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보다 높은 독점력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양국에서의 판매비용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면 同 회사는 국내판매가격을 수출가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덤핑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든 덤핑 행위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덤핑이 고전적인 가격차별의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은 곧 국내에서의 높은 독점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외국에서의 낮은 가격, 즉 낮은 수출가격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수입국에서 덤핑을 제재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독점력이 전혀 없는 완전경쟁하의 생산자 역시 수출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 이하로는 수출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격차별행위로서 국제무역에서 일컫는 전통적인 덤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 圖 2 > 국제가격차별



이와 같은 논리는 수입국 전체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한 국가내의 상이한 두 시장에 대한 가격차별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높은 가격이 부과되는 시장내의 소비자만이 불리하게 차별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⁷⁾ 국제가격차별의 경우에는 수입국 입장에서만 본다면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수입국내에 덤핑이 발생할 경우, 수입국의 소비자는 덤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7) 그러나 한 국가내에서는 가격차별이 반드시 당해국가의 복지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바, 이는 가격차별이 없을 경우에 비해 높은 가격이 설정된 시장에서의 복지감소효과가 낮은 가격이 설정된 시장에서의 복지상승효과보다 반드시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덤핑에 의한 수입품의 저렴한 가격은 수입국내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수입국이 덤핑 판매되는 물품의 순수요자(net demander)라는 점에서 수입국 전체의 후생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덤핑을 제재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출국 입장에서 자국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수출기업의 독점가격설정을 제재하는 조치가 경제학적으로 훨씬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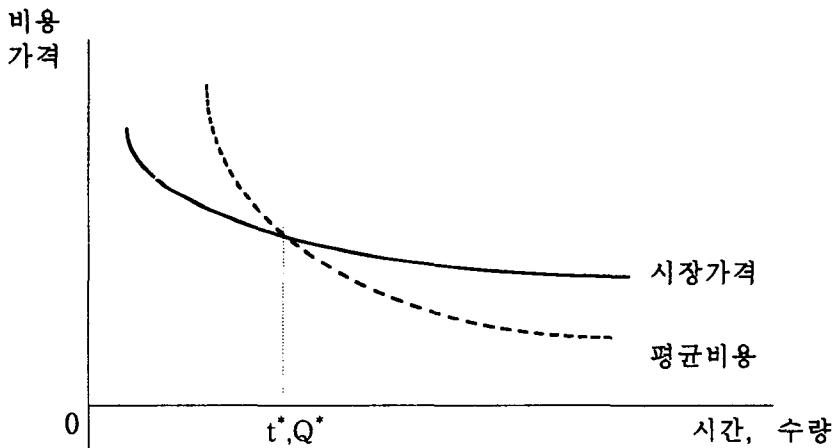
2. 原價以下販賣(Sale below Costs)

덤핑은 본래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덤핑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원가 이하에의 국내판매분을 제외함으로써, 개념적으로 국내에서의 원가이하판매도 덤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원가 이하의 판매는 기업이 특정제품의 평균비용이 일정기간에 거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초기판매가격을 평균비용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격설정행위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비용의 일부가 고정비용일 경우, 기업들이 일정기간 혹은 일정생산량에 이르기까지는 제품의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평균비용 이하의 판매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정비용이 큰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급격한 평균비용의 체감을 예상하고 일정기간 평균비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인 바, 이는 그와 같은 제품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비용의 회수와 제품수명의 전기간에 걸친 이윤의 실현을 전제로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圖 3> 참조)⁸⁾ 더욱이 국내시장이 불황인 경우에 고정비용의 회수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으로서는 일정기간 동안 평균비용 이하의 판매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경기불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업의 손실이 경기의 회복에 따라 점차적으로 회복되면서 그와 같은 판매행위가 종료되겠으나, 경기불

8) 金完淳, “WTO 반덤핑협정의 종합적 평가와 우리 나라 반덤핑관세제도의 발전방향”, 『WTO와 반덤핑관세』(金起秀 編), 세종연구소, 1995.

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당해기업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균비용 이하의 판매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비용 이하의 가격설정은 비용의 일부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느 기업이나 취할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인 행위로서, 모든 원가이하판매를 덤팡으로 간주하여 제재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그의 당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圖 3> 원가이하판매



설혹 수출기업의 원가이하판매를 덤팡으로 정의한다 할지라도 이를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균등한 경쟁조건 및 경쟁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무역관행을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기업과 국내의 경쟁기업이 유사한 비용구조(structure of costs) 및 시장여건을 갖고 있다면 양기업이 평균비용 이하로 판매하게 되는 조건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수출입국의 당해시장이 다같이 불황이고 또한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기업의 평균비용 이하의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국당국이 수출기업의 평균비용 이하의 판매만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무시한 매우 불합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출기업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기 보다는 수입국의 행위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근거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경제학적으로도 그 당위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원가이하판매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수출입국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 결국 일정요건하에서 원가이하판매의 일부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즉, 원가이하판매가 6개월 내지 1년 이내이거나 덤픽 조사대상물품의 20% 미만인 경우에 원가이하의 판매로 발생한 총비용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수출국이 주장한 생산 개시 초기의 원가이하판매 및 경기변동에 의한 원가이하판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3. 掠奪的 덤픽(Predatory Dum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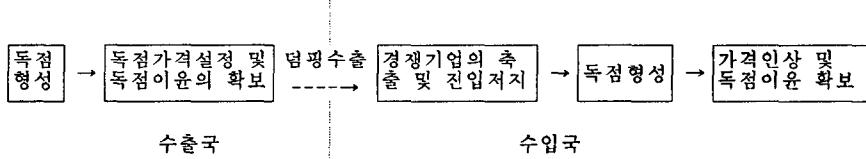
약탈적 덤픽은 수입국내 경쟁기업들의 시장축출이나 잠재적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기간동안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와 같은 판매행위는 궁극적으로 수입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통하여 덤픽으로 인한 손실희수는 물론이고 독점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수입국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며(<圖 4> 참조), 그와 같은 이유에서 약탈적 덤픽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약탈적 덤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따라서 약탈적 덤픽을 反dumping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탈적 가격설정이 가장 어려운 이유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점기업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들이 시장으로의 재진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낮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바, 이는 사실상 독점기업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까지 성공적인 약탈적 덤픽의 경우가 기록된 바는 없으며, 더욱이 약탈적 의도가 있었

는지의 증거를 설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공적인 약탈행위가 없을 경우, 反덤핑 관세의 부과는 기존 생산자의 수출을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국내에는 경쟁적 압력(competitive pressures)이 감소하고 국내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만이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反덤핑 조치는 사실상 국내의 수입경쟁생산자를 판매손실 및 이윤감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경제학적으로는 경쟁이나 효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 4> 양달전 풍



IV. 反dumping 制度의 改善方案

1. 反덤핑 制度의 反競爭的 要素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反덤핑 제도의 경제학적 논거(economic rationale)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차별화, 원가이하 판매 및 가격경쟁 등의 행위는 사실상 건전한 시장경제의 보편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상 약탈적 의도가 없는 가격설정 행위는 反경쟁적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복지(consumer welfare) 및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활발한 경쟁으로 간주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경쟁정책 및 경쟁법하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그 자체로서 불공정하다거나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 및 국내 反덤핑 규정에서는 덤픽에 관한 기계적인 정의 및 제재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남용됨으로써 오히려 反경쟁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많은 국가들 사이에 무역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反덤핑 규정의 개선이 핵심이슈로 등장되어, 새로 제정된 WTO/反덤핑협정에서는 덤픽 및 피해조사와 관련한 자의적인 反덤핑 제도운용의 여지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은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反덤핑 제도는 그의 성격상 앞으로도 비관세장벽으로서 경쟁제한적 무역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바, 현행규정 중 특히 경쟁제한적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反덤핑 규정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前述한 바와 같이 가격차별화, 원가이하판매 및 가격차별화 등의 행위가 건전한 시장경제의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反덤핑 규정은 수입의 공정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또는 수출기업의 약탈적인 의도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었을 때 이를 덤픽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수입국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사실상 덤픽 판정은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덤픽 판정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수입경쟁기업들은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덤픽 제소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국의 수출의지를 위축시킴으로써 수입국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덤픽으로 인한 피해판정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수입국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GATT 第6條와 WTO/反덤핑협정에서는 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픽의 존재사실은 물론이고 그러한 덤픽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피해위협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WTO 협정상에는 피해판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열거하고는 있으나, 국내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지표를 총망라함으로써 평가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내가격이나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 혹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실질적 피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조사당국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덤플링 마진이 국내가격이나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즉 덤플링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국내의 경기불황시에는 조사당국이 덤플링 존재사실만 발견되면 이를 국내산업피해의 원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상적인 무역관행마저도 제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셋째, 현행 WTO / 反덤핑협정상에는 수출국의 가격인상약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가격카르텔을 유발시킨다. 즉, 同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혹은 덤플링 가격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안하거나, 또는 수입당국이 그와 같은 제안을 통하여 상대방이 수락한 경우에도 反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함으로써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를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규정은 사실상 가격경쟁에 反하는 독점화(cartelization)를 통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확보하려는 특정 생산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反덤핑 제소는 곧 수출기업의 수출자율규제의 동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행 WTO / 세이프가드協定 第11項에서는 정당한 세이프가드 절차에 위배되는 VRA나 OMA 등 일체의 수입규제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자율규제는 수출입국간의 공식적인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비밀리에 혹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법으로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反덤핑 조치의 수출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反덤핑 제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수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묵시적인 수출자율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수출기업과 수입기업들간의 담합행위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제 카르텔화를 유도할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다섯째, 反덤핑 제도는 외국기업의 가격차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국 또는 특정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수입제한은 비교우위원리에 입각한 국가간의 경쟁 및 무역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섯째, 일부 국가들은 국내 反덤핑법에 우회 덤플링 방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규정은 자칫하면 국제무역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반덤핑제도가 정당화되는 상황에서는 우회 덤프ing이 반덤핑 조치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국제무역질서의 존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前述한 바와 같이 반덤핑 제도는 어느 경우에도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입국 또는 제3국을 통한 수출에 대해서까지 덤프ing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생산활동의 범세계화가 급속화되어 가는 현실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회덤핑방지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운용은 각국의 상이한 부가가치율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2. 反덤핑 制度의 改善方向

덤프ing을 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과다생산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수요의 변동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덤프ing을 할 수 있으며, 혹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추후에 독점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약탈적 의도에서 덤프ing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덤프ing의 동기가 무엇이든 덤프ing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고, 국제적으로는 분리된 시장이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가격차별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격차별과 덤프ing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경쟁정책에서의 가격차별의 개념이 무역정책에서는 덤프ing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간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무역정책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 즉 모든 가격차별이 反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는 반면, 경쟁정책에서는 일반적 개념의 가격차별보다는 약탈적 가격설정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反덤핑법은 외국기업의 저가판매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데에 규제의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가 규제대상이 되며, 경쟁법은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을 보장하는 데에 규제의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설정이나 부당염가판매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었듯이, 약탈적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反덤핑 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학적 당위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산업을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주의적 효과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反덤핑 제도는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first best policy)이 아니며, 오히려 최상의 정책은 독점적 지배를 감소시킴으로써 덤플링을 할 수 있는 능력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反덤핑 제도를 폐지하고 덤플링 규제를 경쟁정책과 경쟁법하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와 같은 개선이 어려울 경우 反덤핑의 원칙 및 절차를 경쟁법의 원칙 및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한 反덤핑 정책을 경쟁정책과 보다 많은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反덤핑 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反덤핑 제도의 틀을 대부분 유지하되, 동 제도가 경쟁정책과 많은 연관을 갖도록 그 운용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反덤핑 제도의 원칙 및 절차까지 경쟁법의 원칙 및 절차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反덤핑 제도를 단기적으로 경쟁정책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방안은 反덤핑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현행 발동요건에 경쟁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며, 두번째 방안은 덤플링 및 피해판정후 경쟁조건을 고려하여 反덤핑 조치의 수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안 모두가 현행 反덤핑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쟁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는 절차적 단계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첫번째 방안은 현행 反덤핑 제도의 발동요건인 덤플링 및 피해사실의 존재 유무에 당해산업이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여부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제소기각 또는 조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번째 방안은 덤플링 및 피해에 관한 긍정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경쟁조건 등을 포함한 국가의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反덤핑 조치의 수준을 완화 또는 조치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두가지 방안의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지 경쟁조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 및 규정의 설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① 反덤핑 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반경쟁적 또는 부정적 효과, ② 조사대상물품의 최종수요자 또는 가공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③ 反덤핑 조치가 국내물가 또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 ④ 국내소비자의 후생, 건강 및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쟁조건과 관련해서는 ① 제소기업의 독과점형성 여부 및 그의 가능성, ② 조사대상 품목이 중간재일 경우, 국내 최종재 산업에 미치는 反경쟁적 효과, ③ 조사대상기업이 여타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당위성이 없는 反덤핑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덤플링 규제도 경쟁정책과 경쟁법하에서 다룰 수 있도록 反덤핑 제도의 원칙 및 절차를 경쟁법의 원칙 및 절차로 대체해 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덤플링 혐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약탈적·독점적 가격차별이 입증되도록 하며,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경쟁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련 가격설정행위의 反경쟁적 효과가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탈적 의도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탈적 가능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와 관련된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덤플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및 집중율(concentration ratio)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혹은 평균비용 또는 한계비용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약탈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⁹⁾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당해산업의 특성 및 경기변동이나 환율변동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덤플링 규제를 경쟁정책이나 경쟁법하에서 다루는 데에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있다. 첫째, 국내에서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을 다루는 경쟁법의 기준이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가 국내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와 일치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9) Davies & McGuiness(1982)는 기업이 한계비용 이하로 수출을 하는 이유로서 불확실성, 경영목표의 추구, 전략적 진입저지 등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Davies, S.W. & McGuinness, A.J., "Dumping at Less than Marginal Cost", 1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2 참조).

것이다. 덤픽 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보장은 反덤핑 규제가 보호 무역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를 초월한 경쟁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각국 시장간의 연관성은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경영환경 역시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그 이전에 각국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등을 통한 협력적인 법집행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경쟁정책 및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진입 장벽의 증가 및 특정 무역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경쟁감소라고 할 수 있다.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한, 범국가적 경쟁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자유무역은 시장개방을 통하여 특정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감축시킴으로써 덤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간의 가격차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을 통한 약탈적 덤픽의 제재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덤픽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하에서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당위성이 결여된 反덤핑 제도의 필요성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덤픽을 제재하는 데에는 결국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강력한 시행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V. 結論

反덤핑 제도는 흔히 수출국의 불공정한 가격설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상 동 제도가 일부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反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가격 차별이나 원가이하판매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가격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행위가 약탈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경우, 이는 반경쟁적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복지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공정한 경쟁적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덤핑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현행의 반덤핑 제도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경쟁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당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덤핑에 대한 기계적 정의에 기초한 현행 반덤핑 제도는 불공정한 가격설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의 정책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덤핑의 반경쟁적 효과 및 약탈적 의도에 근거한 강력한 경쟁정책의 실시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경쟁정책의 실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덤핑의 근원자체를 없애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현행 반덤핑 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덤핑 제도를 단기적으로 철폐하거나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모든 국가가 일정수준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그에 대한 국가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 제도가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반덤핑 규정에 경쟁조건을 고려하도록 보완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국가들간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조화와 상호인정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이행하는 중간단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반덤핑 제도는 모든 국가들이 경쟁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철폐될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완순, “WTO 반덤핑 협정의 종합적 평가와 우리 나라 반덤핑 관세제도의 발전 방향”, 『WTO와 반덤핑 관세』(김기수 編), 세종연구소, 1995.
- 김정훈, “반덤핑 관세의 경제이론적 배경”, 『WTO와 반덤핑 관세』(김기수 編), 1995.
- 채 육, “반덤핑”,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 GATT 및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Carlton, D. W., and Perloff, J. M.,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New York : Harper Collins, 1994.
- Davies, S. W. & Mcguinness, A. J., “Dumping at Less than Marginal Cost”, 1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2.
- Deardorff, A. V., “Economic Perspectives on Antidumping Law”,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 A Comparative Study*, edited by John H. Jackson and Edwin A. Vulmust, 1991.
- Jackson, J. H., *The World Trading System :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hapter 10. Cambridge : MIT Press, 1989.
- Marceau, G., *Anti-Dumping and Anti-Trust Issues in Free-Trade Areas*, Oxford : Clarendon Press, 1994.
- Slavator, D., *International Economics*, 4th ed. New York : Macmillan, 1993.
- Viner, J., *Dumping :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Reprint, New York : Kelly, 1966.